

국 민 권 의 위 원 회

제 4 소 위 원 회

의 결

의안번호 제2023-4소위37-국02호

민원표시 2AA-2308-0971586 영내 교통사고 발생 처리 절차 이의

신 청 인 A

피신청인 B

관계기관 C

의 결 일 2023. 11. 13.

주 문

피신청인에게 2023. 1. 15.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의견표명한다.

이 유

1. 신청원인

가.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에서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운전병으로 복무하였다. 신청인은 2023. 1. 15. 피신청인의 지시로 영내에서 대형버스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병사(이하 ‘피해자’ 라 한다)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교통사고(이하 ‘이 민원 사고’ 라 한다)를 일으켰다.

나. 피신청인은 군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신청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데, 이는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.

2. 피신청인의 주장

- 1) 「국가배상법」 제2조에 따라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. 이에 군차량 보험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국방부와 보험사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차량으로 군인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약관을 적용해 왔었는데, 국방부가 이를 개선하여 2023. 7. 1.부터 군차량으로 군인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.
- 2) 그러나, 이 민원 사고는 2023. 6. 15. 발생하여 보험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야 하며, 향후 이 민원 사고가 경과실로 판단되면 신청인은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3. 사실관계

- 가.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지 내 군차량 운행 자격요건 등에 따르면, 피신청인은 현역 병을 대상으로 운전자 자질관리 시험을 통해 부대 내에서만 군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. 신청인은 3주간 보수교육을 받고 운전기량 평가에 합격하여 2022. 1. 27. 부대내에서 군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.
- 나.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배차기록서 등에 따르면, 신청인은 2023. 1. 15. 피해복구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대형버스를 배차받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민원 사고가 발생하였다.
- 다. 피신청인이 작성한 차량 사고 발생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사고현장 사진 등은 다음과 같다.

1) 일시 / 장소: 2023. 1. 15. 11시 15분경 / 피신청기관 영내

2) 사용관: 피신청기관

3) 사고개요: 사고자는 피해복구 훈련 인원 수송 지원 후 복귀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중인 피해자를 인지하였으나,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원칙을 미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출발하던 피해자를 충격함.

4) 피해사항: 인적피해(상병○○○)

마. 국방부는 2023. 6. 군차량 보험에 특별약관을 신설하여 2023. 7. 1.부터 군차량 교통사고로 인해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
바.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기관에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 및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)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C수사대에 문의하였는데, C수사대는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칫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.

2) 따라서,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이 민원 사고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, 국가배상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지 않았다.

사. 우리 위원회가 지구배상심의회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, 지구배상심의회에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심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.

아. 2023년 군차량 사고 발생시 국가배상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순서	조치내용	관련부서	비고
1~4	사고지역 통제 등	수송, 군사경찰	사고차량 보유부서
5	국가배상 여부 판단	사고부서, 수송	•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속 부대 법무실 질의
6	국가배상 예상 알림	사고부서→피해자	•피해자에게 알림(국가배상이 진행 절차) •피해자 차량수리비는 자비로 선 조치
7~8	국가배상 예상에 따른 관련부서 신속 보고, 증거자료 확보 등	사고부서→ 군사경찰 법무실	• 사고발생보고, 자동차등록원부, 보험증, 수리비청구서 등, 입원.치료확인서 등, 수사보고서, 운전면허증, 자술서 등
9~10	국가배상 결정 통보	본부 법무실 →법무실	•본부에서 피해자(또는 보험사)와 협의 •절차는 군에서 주도적 진행
11	국가 배상금 지급 통보	본부 법무실→법무실	•피해자에 배상금 지급

4. 판단

가. 관계법령 등

1) 「국가배상법」

- 제2조(배상책임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·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(戰死)·순직(殉職)하거나 공상(公傷)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·유족연금·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「민법」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(求償)할 수 있다.

나. 판단내용

- 1)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는 신청인과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여야 하고,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합의를 중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별도로 국가배상 등을 안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신청인과 피해자의 직접 합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① 이 민원 사고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영내에서 대형버스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, ② ‘군차량 사고 발생시 국가배상 절차’에 따르면, 사고부서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에 대해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 점, ③ 국방부는 군차량으로 군인 간 사고 발생 시 보험 미적용으로 군인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차량 보험에 ‘군.경 직무수행 중 추가 특별 약관’을 신설하여 2023. 7. 1.부터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가 2023. 7. 1.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합의 등 모든 조치를 신청인에게

만 부담하게 하였을 뿐 군수사 수송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에 대한 안내는 소홀히 한 점, ④ 우리 위원회가 지구배상심의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, 지구배상심의회는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국가배상심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절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2) 한편, 이 민원 사고 이후 관련 조치가 지연된 만큼 지구배상심의회가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를 접수하면 이를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자 한다.

5. 결론

그러므로 이 민원 사고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